

5·18 헌법전문 수록, 여야 정치권 협치 출발점 돼야

1987년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 때 통일민주당 개헌시안에 첫 등장 문 전 대통령·윤 대통령 대선공약... 여야 공감 불구 시기·내용 대치 국민 대다수 지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원 포인트 개헌 등 나서야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선 벌써 40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5·18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지형변화로 인해 국민 대통합의 초석으로 5·18 헌법수룩이 첫발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월 정신이 더 이상 '진보·보수 대결'의 정치 현안이 아닌 국민 대통합을 이룰수 있는 공동 의제이기 때문이다.

5·18 헌법수룩 의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는 '6·29선언'을 통해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고 평화 정권교체를 약속했다. 곧바로 7월 1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의 민주화 조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개헌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 때 여야 각각 4인의 대표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에서 국회에 제출할 개헌 초안 마련을 위한 개헌 협상을 시작했다.

1987년 당시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의 헌법개정시안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 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했고...(이하생략)"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 '5·18 정신의 계승' 부분이 빠졌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적 협상을 밀고 나면가면서 슬그머니 누락됐다.

이후 오월 정신 헌법 수록이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한 건 개헌 30년 만인 지난 2017년 대선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2017년 4월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개헌의견 발표 과정에서 개헌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라는 3대 개헌 원칙을 바탕으로 5대 개헌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이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018년 3월 5·18 정신이 전문에 포함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8년 5월 24일에 헌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으나 당시 자유한



체험학습을 위해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학생들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투표불성립'에 의해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

당시에도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없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보수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5·18 헌법전문 수록은 개헌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과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5·18 민주주

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개헌과제라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개헌이 다른 정치적 쟁점들을 뺏아들이는 블랙홀(Black Hole)이어서 여야의 합의가 어렵다면,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물론 다양한 개헌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가급도 통상임금”...광주도시공사 직원들, 항소심도 승소

259명 2억여원 추가 지급 판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원들의 평가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김성주)는 A씨 등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억3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광주도시공사에서 지급한 내부평가급 중 기본연봉 월급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과등급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월~2021년 9월까지 수당(관리업무·시간외근무·야근근무·휴일근무·연차휴가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사측은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또 통상임금 산정시 노조와 통상임금에서 평가급을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사측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의 평가급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보장된다면 고정성이 인정되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난폭 운전자 90km 추격 바퀴에 실탄 쏘 검거

광주 일곡동 교차로 신호위반 도주

경찰이 인도를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고속도로로 달아난 50대 운전자를 90km를 추격하다 차량 바퀴에 실탄을 쏘 붙잡았다.

광주북부경찰은 A(5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10시 10분께

까지 50여분간 광주시 북구 일곡동 교차로에서 전북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90여 km를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인도를 넘나들고 신호를 어기며 운전하던 A씨는 순찰 중인 경찰에게 발각돼 도주를 시작했다.

서해안고속도로 방면으로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정체된 차량을 뚫고 지나가다 2대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순찰대와 공조해 A씨를 뒤쫓던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비롯해 바퀴에 실탄 2발을 쏘 김제 IC 갓길에 A씨 차량을 멈춰세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약간이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음주와 무면허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임금소송 승소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수당 지급 판결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지역 아이돌보미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랐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김성주)는 아이돌보미 144명이 광주·전남 대학 2곳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제공기관 2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A씨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시가 위탁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근무했다. 업무 수행 내용과 수당·계약해지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이행했다.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서비스 시작·종료 시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록했다. 기관들은 활동일지를 토대로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와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주휴·연차휴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6년 1월 기관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다.

1심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무실 출근 의무는 없었지만, 업무는 사실상 기관들의 지휘·감독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돌보미 선택에 기관들의 실질적인 재량이 없다고 보고 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기관들은 매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라는 복무 규율에 따라 아이돌보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했다”면서 “아이돌보미들에게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기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채용과 교육을 거쳐 활동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복무규율과 활동점검을 받은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40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아이돌보미 6명이 대학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2만~34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